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7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김성원·이종성·임이자

金炳旭・김도읍・김정재

서일준 · 정진석 · 송언석

권명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.

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, 운영·활동비, 재해보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,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의용소방대원은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시·도지사가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할필요가 있음.

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

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, 시·도지사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·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나.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한 질병·부상·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성과중심의 포상 등)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·관리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·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6조의2(성과중심의 포상 등)
	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	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
	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·관리
	하고,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
	포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
	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
	<u>평가·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</u>
	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
	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
	의 조례로 정한다.
제17조(재해보상 등) (생 략)	제17조(재해보상 등) ① (현행 제
	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
	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
	가입할 수 있다.